

의안번호	2202728
의 퇴 인	이상희의원
회 답 일	2024. 10. 7.
추 계 번호	24D25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400만원(연평균 48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34조의2)	24	0	0	0	0	24	5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2	안 제34조의4(보상금) 신설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함(제1항 및 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신설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 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신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34조의11(조세 면제) 신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 지 아니함	의무규정
6	안 제34조의16(소멸시효) 신설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4조의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 상심의위원회) 신설	○	-
2	안 제34조의4 (보상금) 신설 ~ 제34조의16(소 멸시효) 신설	×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 등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다만,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 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또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가 면제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현시점에서 추정 곤란함 -참고로 2010년에 활동이 종료된 1기 위원회의 진실규 명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총 11,175건을 접수하여 8,450건을 진실규명하였고,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2024년 8월 기준 총 20,245건을 접수하여 6,241건을 진실규명하였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개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유사사례인 부마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사례를 준용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5.26.¹⁾까지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5.5.26.에 종료되므로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도 2025년 5월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34조의2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겸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회의개최 횟수는 연 12회로 가정
 - 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부마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보상금등 심사와 판정을 위한 2개의

1)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여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활동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임.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이나, 2024년 1월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 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며 회의개최 횟수는 각각 연 12회로 가정함

- 회의 수당은 2024년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2433-300) 예산의 위원회 수당을 준용하여 1인당 30만원(참석수당 15만원, 안전검토비 15만원)으로 가정

[표 2]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보상심의위원회	12	0	0	0	0	12	2
분과위원회(2개)	12	0	0	0	0	12	2
합계	24	0	0	0	0	24	5

주 1.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5년 5월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2. 본 추계 결과는 기존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부추계) 추계결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34조의2)	24	0	0	0	0	24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